

의안번호	2220594
의 퇴 인	송옥주 의원
회 답 일	2026. 9. 4.
추계번호	26B4078

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34조제2항 (위험물의 하역)	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자체안전관리계획서를 승인하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험물 하역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 이 경우, 관리청은 위탁한 사항에 관하여 위탁 받은 기관이나 단체로 하여금 보고하게 할 수 있다.	재량규정

II. 미첨부 등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34조제2항 (위험물의 하역)	• 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□ 개정안은 친환경선박연료 공급 확대에 대응하여 자체안전관리계획서¹⁾

1) 시행령 제14조(자체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승인 등) ① 법 제3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자체안전관리계획(이하 "자체안전관리계획"이라 한다)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최고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환경보호 방침에 관한 사항
2. 위험물 취급 안전관리 전담조직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
3. 위험물 안전관리자의 선임(選任) 및 임무에 관한 사항
4. 위험물 하역시설(급유선을 포함한다)의 명칭, 규격, 수량 등의 명세에 관한 사항
5. 위험물취급자에 대한 안전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
6. 소방시설, 안전장비 및 오염방제장비 등 안전시설에 관한 사항
7. 위험물 취급 작업기준 및 안전작업 요령에 관한 사항
8. 부두 및 선박에 대한 안전점검계획 및 안전점검의 실시에 관한 사항
9. 종합적인 비상대응훈련의 내용 및 실시 방법에 관한 사항
10. 비상사태 발생 시 지휘체계 및 비상조치계획에 관한 사항
11. 불안전 요소 발견 시 보고체계 및 처리 방법에 관한 사항
12. 그 밖에 위험물 취급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리청이 고시하는 사항

② 자체안전관리계획의 유효기간은 자체안전관리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.

의 검토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, 자체안전관리계획서에 대한 기술적 검토를 전문기관·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

- 개정안에 따라 관리청이 친환경선박연료 공급 관련 위험물 하역 자체안전관리계획서의 승인 및 이행 여부 확인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, 관리청이 부담하는 위탁 관리·보고 모니터링 경비 등 발생할 수 있으나, 현재 위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하위 법령에 위임되어 있어 현 시점에 관련 비용을 합리적으로 추산하는 데 한계가 있음

- (관리청) 해양수산부장관(국가관리무역항) 또는 시·도지사(지방관리무역항)²⁾

- 따라서 현 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,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 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

③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자체안전관리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는 자체안전관리계획의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자체안전관리계획의 갱신을 신청할 수 있다.

④ 법 제34조제1항 후단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"이란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, 제6호, 제8호 및 제10호의 사항을 말한다.

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체안전관리계획의 승인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.

2) 법 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~ 2. (생략)

2의2. "관리청"이란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행정관청을 말한다.

가. 「항만법」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가관리무역항: 해양수산부장관

나. 「항만법」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방관리무역항: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(이하 "시·도지사"라 한다)

Ⅲ. 부대의견

☐ 없음

Ⅳ. 작성자

☐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경제비용추계과	위진수	예승우

☐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위진수	02-6788-4650	wjinsu@nabo.go.kr